

서울특별시장애인사격연맹 회장선거관리규정

2020. 09. 25. 제정

2024. 10. 18.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근거 및 목적) 이 규정은 대한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운영규정 제32조의2, 대한장애인사격연맹(이하 “연맹”라 한다) 정관 제38조 및 시·도지부운영규정 제10조에 근거하여 시·도지부 회장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이하 “회장선거”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시·도지부의 회장선거에 관한 사항은 중앙연맹 및 서울시장장애인체육회에서 규정으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또한, 해당 규정에서 명확히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유권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도 그러하다.

제2장 선거관리위원회

제3조(선거사무 관장) 회장선거 사무는 해당 시·도지부 사무국에서 관장한다. 다만, 사무국 부재 또는 기능수행이 원활하지 못할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관장한다.

제4조(선거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시·도지부는 제5조 각호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회장 임기만료일 전 75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3명 이상 5명 이내의 인사로 구성하되 시·도지부의 임원이 과반수를 넘을 수 없다. 임원 이외의 인원은 연맹 직원이 아니면서 선거인을 추천하는 어떠한 단체에도 소속되지 않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총회가 구성되지 않아 이사회에서 회장을 선출할 경우에는 이사는 위원이 될 수 없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체육단체 운영 또는 지원에 경험이 많은 인사 중에서 회장

이 추천한 자로 이사회 의 동의를 받아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단, 회장이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시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 운영규정 12조6항 및 연맹 가맹단체 시도지부 운영규정 제13조 제2항에 따라 직무를 대행하는 자가 위원을 추천하고 이사회 의 동의를 받아 위촉한다.

<개정 '24.10.18.>

④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해당 시·도지부의 사무국장으로 하며 사무국장이 없는 경우에는 회장이 임원중에서 지명한다.

제5조(선거업무) 위원회는 다음의 업무를 관장한다.

1. 선거공고
2. 선거인 명부 작성 및 확정
3. 입후보 등록 고지
4. 선거권 및 피선거권자의 결격사유에 관한 검토 및 조치
5. 선거운동의 제한, 정견발표에 관한 관리
6. 투표용지에 관한 업무
7. 선거(투·개표)에 관한 업무
8. 선거의 연기 및 재선거에 관한 업무
9. 선거사무 처리에 대한 이의신청의 결정
10. 공명선거에 관한 업무
11. 당선자 보고 및 선포
12. 선거지침에 관한 업무
13. 불법, 부정 선거운동 감시 및 조사, 단속에 관한 업무
14. 기타 이 규정, 지침 등으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한 결정

제3장 회장선출기구 및 선거인

제6조(회장선출기구) 가맹단체운영규정 제32조의3 및 연맹 정관 제10조에 따라 회장선출기구는 총회가 된다. 다만, 총회가 구성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이사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4.10.18.>

제7조(선거인) ① 제6조에 의한 시·도지부 회장선출기구의 선거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회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
가. 시·군·구지부의 장

나. 선수위원장(해당 지역 등록선수 전원의 직접선거로 선출된 선수, 이하
같음)

2. 총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가. 이사회 임원 중 이사(회장은 제외)

나. 시·군·구지부의 장

다. 선수위원장

② 선거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만 18세 이상(정기 등록일 기준)

2. 선수위원장은 선수 등록을 필 한 자

③ 제1항의 선수위원장은 비장애인 선수는 포함되지 아니하며, 또한 다종목
에 등록된 선수는 1인 1표로 제한한다.

제8조(선거인 명부의 작성)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제7조의 선거인에 대하여 선거일
10일 전까지 자격 유무를 검토하여 선거인 명부(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선거인이 선거 전일까지 해당 직위를 사임 또는 해임될 경우에는 선거인
자격을 상실한다.

제9조(선거인 명부의 열람 및 이의신청과 결정)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제8조에 따
라 작성된 선거인 명부를 시·도지부와 중앙연맹 및 시·도장애인체육회 홈페이지
에 공고하여야 하며, 선거권자 및 후보자가 선거인 명부를 열람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② 선거권자 및 후보자는 누구든지 선거인 명부에 누락 또는 오기가 있거나 자
격이 없는 선거인이 등재되어 있다고 인정되면 열람 기간 내에 구술 또는 서면
으로 해당 시·도지부의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의 다음날까지 이를
심사·결정하되, 그 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결정할 때에는 즉시 선거인명부를
정정하고 신청인·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유 없다고 결정한 때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선거인 명부의 열람 기간은 3일로 한다.

⑤ 선거인 명부는 열람 기간 종료일 다음날 확정한다.

제4장 후보자 자격 및 등록

제10조(선거일 등의 공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 명부작성 개시일 전일에 선거

일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해당 시·도지부와 중앙연맹 및 시·도장애인체육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회장후보자 자격요건) ① 회장후보자 중 중앙연맹 제14조 및 시·도지부운영규정 제12조에서 정하는 임원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후보자가 될 수 없다.

② 장애인체육회, 중앙연맹(시·도지부, 시·군·구지부 포함), 시·도장애인체육회(시·군·구장애인체육회, 읍·면·동장애인체육회 포함)의 회장과 임직원이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회장의 임기 만료일 전 90일까지 후보자 등록의사 표명서 제출과 동시에 직무는 정지된다. 다만, 보궐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하는 경우 그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4.10.18.>

③ <삭제 '24.10.18.>

제12조(회장후보자 등록 및 공고) ① 후보자가 되려는 자는 후보자 등록기간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보자등록신청서의 접수는 공휴일에도 불구하고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후보자 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3호 서식의 후보자 등록신청서
2. 가족관계증명서
3.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등기사항 부존재 증명서
4. 스포츠윤리센터에서 발급한 징계사실유무확인서 <개정 '24.10.18.>
5. 기타 후보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는 확인서(별지 제5호 서식)
6.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별지 제6호 서식)
7. 후보자 등록의사표명서(제11조 제2항에 해당하는 후보자에 한함)

<개정 '24.10.18.>

③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등록부(별지 제7호 서식)에 등재한 후 후보자에게 접수증(별지 제8호 서식)을 발급한다. 다만, 제2항 1호부터 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 등을 갖추지 아니한 등록신청은 수리하지 아니한다.

④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등록 마감 후에 후보자의 범죄경력 조회하는 등 후보 등록 자격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⑤ 선거관리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정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체육단체의 정관 및 규약이 정하는 임원 결격사유를 취합하여 회장 후보자 등록기간 전일까지 게시하여야 한다.

⑥ 회장후보자 등록 마감일의 다음 날에 회장 후보자 명단을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해 해당 시·도지부와 중앙연맹 및 시·도장애인체육회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제13조(등록무효)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등록 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후보자의 등록은 무효로 한다.

1. 후보자가 제11조에 따른 후보자의 자격이 없는 것을 발견된 때
2.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서류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위변조가 발견된 때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등록을 무효로 한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후보자에게 등록무효의 사유를 명시하여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4조(후보자 사퇴의 신고) ① 후보자가 사퇴하려는 경우에는 자신이 직접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② 후보자 사퇴의 신고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다.

제15조(회장후보자 정견발표) 회장후보자의 정견발표는 후보자와 선거관리위원회가 협의하여 정한다.

제5장 선거 및 선거운동

제16조(선거일)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현 회장의 임기만료일 전 60일까지 선거가 실시될 수 있도록 선거일을 정하여야 한다.

②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는 그 실시 사유가 확정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제17조(선거운동의 정의) 선거운동이란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의 개진·의사의 표시
2.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3. 통상적인 업무행위

제18조(선거운동의 주체 및 방법) 후보자는 공보, 전화, 명함,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선거일에 후보자 소개 및 소견발표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제19조(선거운동 기간)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 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 전일 까지로 한정한다. 단, 제15조에 따른 후보자의 선거당일 정견발표는 예외로 한다.

제20조(금지행위) 다음 각 호의 해당 행위를 금지한다.

1. 특정인의 인신공격 등 중상비방을 하거나 서명날인 운동을 주동, 선동 또는 참여하는 행위
2. 선거에 관하여 금품수수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3. 입후보자가 회장선거관리위원회의 승인 없이 별도의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거나 선거 종사자를 운영하는 행위
4. 선거관리위원 및 해당 시·도지부 직원이 특정인 지지 옹호, 격려하는 행위
5. 허위의 이력을 기재하여 배포하는 행위
6. 기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

제21조(벌칙) 위원회는 회장선거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를 하여 적발된 자에 대하여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제재할 수 있으며, 제재내용은 대한장애인체육회 회장선거관리규정 제16조를 준용한다.

제6장 투표 및 개표

제22조(선거방법 등) ① 선거는 무기명 비밀 투표로 한다.

② 투표는 선거인이 직접 투표용지에 기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 투표는 선거인 1명마다 1표로 하며, 대리인 투표는 허용하지 않는다.

제23조(투표소의 설치)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소의 설치 수, 설치장소 등을 협의하여 선거일 전일까지 투표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하고 중립적인 사람 중에서 투표소에 투표에 관한 사무를 관리할 투표관리관 1명과 투표사무를 보조할 투표사무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제24조(투표용지) ① 투표용지(별지 제11호 서식)에는 후보자의 기호와 성명을 표시하되, 기호는 후보자의 계재순위에 따라 “1, 2, 3” 등으로 표시하고, 성명은 한글로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한글로 표시된 성명이 같은 후보자가 있는 경우

에는 괄호 속에 한자를 함께 기재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등록 마감 후에 후보자 또는 그 대리인의 참여하에 투표용지에 게재할 후보자의 순위를 추첨의 방법으로 정하여야 한다. 다만, 추첨 개시 시각에 후보자 또는 그 대리인이 참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선거관리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가 그 후보자를 대리하여 추첨할 수 있다.

제25조(감표위원 선정) 투표 감표를 위한 감표위원은 선거인단 중 3인의 위원을 감표위원으로 선정한다.

제26조(투표) ① 선거인은 감표위원의 참여하에 본인임을 확인받은 후 선거인 명부에 서명하고 투표용지 1매를 받아야 한다.

② 선거인은 투표용지를 받은 후 기표소에서 기표를 한 후 그 자리에서 보이지 않게 접은 후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제27조(투표시간) 투표시간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제28조(투표권 제한) 회장후보 출마자는 투표권을 보유할 수 없다.

제29조(개표참관인) 각 후보자는 개표참관인 1인을 선정하여 선거일 전일까지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 하여야 하며, 개표참관인은 개표상황을 참관하여야 한다.

제30조(무효투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투표지는 무효로 한다.

1.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2. 어느 후보자의 난에도 기표를 하지 아니한 것.
3. 2인 이상의 후보자의 난에 표를 한 것.
4. 어느 후보자의 난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5. 기표용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문자 또는 다른 사항을 기입한 것.
6. 선거인 자신이 투표용지를 공개한 것.

제31조(개표결과 보고서 작성) 감표위원은 개표가 끝난 즉시 개표결과 보고서(별지 제13호 서식)를 작성 날인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장 당선 결정

제32조(회장 당선인 결정) ① 유효투표 중 다수의 득표를 한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다수 득표수가 동수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② 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선거일에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제33조(회장 당선인 공고) 선거관리위원회는 회장 당선인이 결정되면 선거일 다음 날에 즉시 별지 제14호 서식에 의거 회장 당선인을 해당 시·도지부와 중앙연맹 및 시·도장애인체육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8장 보 칙

제34조(재선거) 다음 각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1. 후보자가 없는 경우
2. 당선인이 없는 경우
3.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무효 결정이 있는 경우

제35조(보궐선거) ① 회장이 궐위된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하며, 그 잔여임기는 가맹단체운영규정 제32조의2 및 연맹 정관 제9조에 따라 정한다. <개정 '24.10.18.>

② 보궐선거는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와 같은 방법으로 실시한다.

제36조(규정의 승인)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시·도장애인체육회의 승인을, 시·도장애인체육회에 가맹하지 않은 경우에는 중앙연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수정이 있을 때에도 그러하다.

부 칙(2020. 09. 2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해당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 10. 1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해당 서울시장애인체육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공 고

서울특별시장애인사격연맹 제00대 회장 선거일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다 음 -

1. 후보자 등록

○ 년 월 일 시까지

2. 후보자 등록 공고

○ 년 월 일 시

3. 회 장 선 거

○ 일 시 : 년 월 일 시

○ 장 소 :

년 월 일

서울특별시장애인사격연맹

후보자 등록신청서

1. 성명 : (한자:)
2. 주민등록번호 :
3. 등록기준지 :
4. 주소 :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5. 직업 :
6. 학력 :
7. 경력 :

년 월 일 실시하는 서울특별시장애인사격연맹 회장선거에
후보자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 ○ 인

서울특별시장애인사격연맹 귀중

- 첨부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 1통.
2.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각 1부(통).
3. 이력서 1부.

- 주 1. 성명은 가족관계증명서에 기록된 성명을 그대로 적어야 하며, 신청서에 기재된 성명이 가족관계 증명서에 기록된 성명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습니다.
2. 학력은 최종학력을 적고 경력은 중요한 사항(2개 정도)만을 적습니다. 그 외 세부사항은 이력서에 적어 제출합니다.
3. 등록기준지는 가족관계증명서에 기록된 대로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4. 첨부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 외에 해당 법령이나 정관 등에 따른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의 목록을 적고 그 서류를 제출합니다.

서울특별시장애인사격연맹 회장 선거 후보자 등록의사 표명서

성 명:

생년월일:

위 본인은 제07대 서울특별시장애인사격연맹 회장 선거에 출마하고자 사격연맹 규약/정관 및 회장선거 관리규정에 따른 관련사항과 절차 등을 사전에 숙지하고 동 등록의사 표명서를 사격연맹 사무국에 제출합니다.

※ 관련 신분상의 변화

- 단체장 : 동 의사표명서를 제출한 때부터 사격연맹 회장 선거일까지 모든 직무가 정지되고 부회장이 직무대행
- (단체장 제외)비상임 임원 : 동 의사표명서를 제출한 때부터 선거일까지 사격연맹 회장 선거와 관련된 안건의 심의·의결에 참여 불가

년 월 일

성명

(서명)

서울특별시장애인사격연맹 귀중

첨부자료: 소속 단체가 발행한 임원확인서

[별지 제5호 서식]

기타 후보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는 확인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장애인사격연맹 제00대 회장에 입후보하면서 정
관 제12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사항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또한,
사실이 아닐 경우 관련법규에 따를 것을 약속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 ○ ①

서울특별시장애인사격연맹 귀중

제00대 회장 후보자 접수대장

[후보자]

- 성명 : (한자 :)
- 생년월일 : (주민등록번호 :)
- 주소 :
- 직업 (직위) :
- 접수일자 : 년 월 일
- 접수번호 :

상기와 같이 접수하였음을 확인함.

확인자 : 서울특별시장애인사격연맹 (직 위) (성 명) (인)

절 취 선

접수증

- 후보자 성명 : (한자 :)
- 생년월일 : (주민등록번호 :)
- 주소 :
- 직업 (직위) :
- 접수일자 : 년 월 일
- 접수번호 :

상기인은 년 월 일 실시하는 서울특별시장애인사격연맹 회장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장애인사격연맹 회장 (인)

[별지 제9호 서식]

회장 후보자 등록 공고

서울특별시장애인사격연맹 제0대 회장선거의 후보자가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이를 공고합니다.

기호	성명	생년월일	직업 및 직위	비고

년 월 일

서울특별시장애인사격연맹

회장 후보 사퇴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장애인사격연맹 회장에 입후보했으나 사정으로 인하여 회장 후보자에서 사퇴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 ○ 인

서울특별시장애인사격연맹 귀중

연번

제00대 서울특별시장애인사격연맹 회장선거 투표용지

감 표 자	
성 명	서 명

연맹

기호	1	2	3	4
후 보 자 성 명				
기 표 란				

개표 참관인 신고서

년 월 일 실시하는 서울특별시장애인사격연맹 회장선거의 개표 참관인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1. 후보자 성명 :

2. 개표참관인 인적사항

번호	소 속	성 명	성별	생년월일	비고

년 월 일

신고자 : (인)

서울특별시장애인사격연맹 귀중

개표 결과 보고서

제〇〇대 서울특별시장애인사격연맹 회장선거 개표결과

기호	후보자 성명	득표수
		표
		표
		표
		표

년 월 일 실시한 서울특별시장애인사격연맹 제0대 회장선거의 개표결과가 위와 같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감 표 위 원 : (인)

감 표 위 원 : (인)

감 표 위 원 : (인)

서울특별시장애인사격연맹 회장 귀하

[별지 제14호 서식]

회장 당선인 공고

년 월 일 실시한 선거에서 결정된 제0대 서울특별시장애
인사격연맹 회장선거 당선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당 선 인 >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직업 및 직위 :

년 월 일

서울특별시장애인사격연맹